

의안번호	2214644
의 퇴 인	김종민 의원
회 답 일	2026. 1. 21.
추계번호	25A651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8조의3 신설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음 (제1항)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제1항의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음(제2항)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이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제4항)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기간·비용,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제1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28조의3 신설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될 경우 전문가 지정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하여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법원이 지정할 전문가의 자격과 지정 수요, 인건비 단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따라 관할법원¹⁾이 사실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의 자격이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인 경우 공무원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법원이 지정할 전문가(기술심리관 및 조사관, 전문심리위원,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비용추계를 위하여 지정전문가의 자격을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으로 한정하더라도, 각 법원별로 기존 인력으로 수행 가능한 부분과 신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증원 필요한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의 수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에 따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1)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특허법원의 7개 법원에서 관할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② 특허권등(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참고로, 대법원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을 증원하는 데 따른 비용을 1억 8,000만원으로 추계하였음(추계기간: 2025년 단년도)

* [참고자료] 개정안에 따른 예산 소요 검토(대법원)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개정안에 따른 예산 소요 검토(대법원)

(단위: 백만원)

항목	예산 소요	비고
기술심리관 또는 조사관 증원	180	$\cdot 90,195,545\text{원}^{1)} \times 2\text{명}^{2)} = 180,391,090\text{원}$ 1) 기술심리관 또는 조사관의 1인당 평균 연봉 2)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 접수 건수(연평균 346건), 1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40시간), 법원사무관 등의 연간 업무시간(1,840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정

주: 1. 2025년을 기준으로 1년간 소요될 예산을 추정

2.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 등 개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